

## “비수도권 인재” 판단 기준

※ 아래 기준은 관계법령 및 기재부·국토부 지침 등을 참고한 것으로 비수도권 인재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채용담당자의 답변을 받은 후 지원

\* 채용담당(T.063-250-1910), 통화가능시간: 9:00 ~ 17:00

- ① **(비수도권 인재)** 입사지원서의 "비수도권 지역인재 여부"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대학까지의 최종 학력(대학원 이상은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·해외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를 졸업(예정), 재학(휴학) 또는 중퇴한 자이어야 함

### ○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(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)
-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<sup>※</sup>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- \* 예: 고려대 세종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, 건국대 글로벌 등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### ○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
-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-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○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최종학교 소재지가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